

혜전대학교 직원상조회 회칙

제1조 (명칭) 본 회의 명칭은 “혜전대학교 직원상조회”라 한다.

제2조 (목적) 본 회의 목적은 회원(직원)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사회봉사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모든 일에 있어 상부상조하는데 있다.

제3조 (회원의 자격 및 임원구성)

① 회원자격

본 대학에 근무하는 직원(정규직, 무기계약직, 퇴직 후 계약직 전환자)으로서 본 회에 가입(입회)절차를 거친 자로 한다. (단, 회원의 자격은 의무적으로 그 자격을 갖는다.) <개정 2010.2.25.><개정 2015.1.1.>

② 임원구성

- 명예회장 1인
- 고 문 1인(연장자)
- 회 장 1인
- 부 회 장 1인
- 총 무 1인
- 감 사 2인(남1인·여1인)으로 정한다.

③ 명예회장은 총장으로 추대한다. <개정 2015.1.1.>

제4조 (임원의 선출)

- ① 임원의 선출은 연말 총회 시 회장, 부회장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회원의 과반 수 이상 참석으로 최고득점자를 선출한다.
- ②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.

제5조 (임원의 임무)

-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.
-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총괄한다.
- ③ 총무는 본회의 재정을 관리하며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.
- ④ 감사는 본 회의 회무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연말 총회 시 보고한다.

제6조 (임원의 임기)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 (회의) 연말총회 · 정기총회 ·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
- ① 정기총회 : 매년 2월말에 실시하며 회장, 부회장 선출과 결산 및 익년도 사업 계획 등을 협의한다.
-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원의 1/3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- ③ 회의는 일반 회의 외에 화상회의로도 진행할 수 있다.<신설 2021.01.28.>

제8조 (회비)

- ① 월회비 : 매월 25,000원으로 한다. <개정 2013.1.1.><개정 2024.6.19.>
- ② 가입비는 : 신입회원의 입회비는 100,000원으로 하며 납부기한은 가입 월로부터 2개월 내로 하며 2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.
- ③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비를 걷을 수 있다.

제9조 (행사)

- ①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 2회 (하계방학, 동계방학)의 세미나를 가져 회원 상호 간의 우의를 증진하고 자질을 함양한다.
- ② 연간 2회 이상 사회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.<개정 2013.1.1.>
- ③ 시기와 장소는 별도로 정한다.

제10조 (상조) 본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항이 발생시 [별표 1]경조사비 지급기준의 지정 금액 및 물품 등을 지급한다.

제11조 (전별금) 본 회의 회원으로서 퇴직시 [별표 2]의 전별금을 지급한다.<개정 2024.06.19.>

제12조 (환영 및 환송) 본회의 신규 및 퇴직회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원진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다.

제13조 (퇴직공로금) <개정 2024.6.19.>

- ① 본 회의 회원 중 퇴직 회원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년차별로 퇴직공로금 및 패를 지급한다.
 - 1. 10년 이상 : 100만원 및 공로패
 - 2. 15년 이상 : 150만원 및 공로패
 - 3. 20년 이상 : 200만원 및 공로패

제14조 (교통비) 임원의 관외지역 방문시 회비에서 일정금액의 현지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5조 (교수친목회와의 협조) 교수친목회의 애경사는 아래사항으로 국한하며 금액은 1/2의 액수를 지급한다.

- ① 경사 : 본인결혼
- ② 애사 : 본인사망, 배우자사망, (처)부모사망, 자녀사망 근조화 지급 <개정 2013.1.1.>

제16조 (회계년도) 본 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로 한다.

제17조 (회칙 개정) 회칙 개정은 임시총회 또는 정기총회에서 회원 정족수 과반수 이상 참석과 과반 수 이상 의결로 개정한다.<신설 2021.01.28.>

제18조 (해산)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여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한다. <신설 2021.01.28.>

제19조 (해산일) 해산이 의결된 날을 해산일로 한다. <신설 2021.01.28.>

제20조 (상조회비의 환급기준) [상조회 총 잔액×(회원 개인 월 가입 기간/ 전체 회원 월 가입기간 총합)]으로 계산하여 환급한다.<신설 2021.01.28.>

제21조 (상조회비 환급 및 청산) 상조회비의 청산 및 지급은 해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20조를 기준으로 환급액을 결정하여 지급을 완료하고 모든 상조회비의 청산을 완료한다.<신설 2021.01.28.>

부 칙

1. 본 규정은 198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본 규정은 198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3. 본 규정은 1992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4. 본 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5. 본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5. 본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6. 본 규정은 200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7. 본 규정은 2006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8. 본 규정은 201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3.1.1.)

- 제1조 본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5.1.1.)

제1조 본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제3조(회원의 자격 및 임원구성) ①항 회원자격(퇴직 후 계약직 전환자)의 경우는 2015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2016.2.12)

제1조 본 규정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1.01.28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1년 0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4.06.19.)

제1조(시행일) 이 회칙은 2024년6월1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 예외) 2024년 6월말 퇴직자부터 2025년 6월 말 퇴직자는 2023.01.01.일자 퇴직자 지급액(285만원)을 기준으로 퇴직공로금을 지급한다.

[별표 1]

경조사비 지급기준

(2004년 3월 26일기준)

항	종 류	금 액	비 고
1	본인 결혼시	300,000	
2	자녀 결혼시	200,000	
3	본인 사망시	500,000	근조화
4	부모 사망시	300,000	근조화
5	배우자 사망시	400,000	근조화
6	자녀 사망시	100,000	
7	조부모 사망시	100,000	근조화
8	처부모 사망시	200,000	근조화
9	부모 회갑시	200,000	부, 모 회갑, 칠순 중 1회
10	형제 경, 조사	100,000	
11	본인 입원시	100,000	3일 이상 입원
12	자녀 뉘	100,000	
13	직원 해외연수	100,000	
14	상조물품지원	1박스	추가 시 제작비 50%
15	교통비지원	1대	100km이상(본인/부모)

[별표 2]

전별금 산정기준

근무년수	금 액	비 고
1~3년	100,000	
4년	60,000	근무연수 × 400원 × 회원수
5년	70,000	근무연수 × 400원 × 회원수
6년	85,000	근무연수 × 400원 × 회원수
7년	100,000	근무연수 × 400원 × 회원수
8년	115,000	근무연수 × 400원 × 회원수
9년	130,000	근무연수 × 400원 × 회원수
10년	145,000	근무연수 × 400원 × 회원수
11년	160,000	근무연수 × 400원 × 회원수
12년	170,000	근무연수 × 400원 × 회원수
13년	190,000	근무연수 × 400원 × 회원수
14년	200,000	근무연수 × 400원 × 회원수

※15년차 ~ : 연차적으로 10,000원씩 추가하여 계산